

속초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4. 5. .
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1. 제 안 이 유

- 지방제정법시행령의 개정(제156조)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담당 회계 공무원의 관직을 변경코자 함.

2. 주 요 골 자

- 속초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 기금관리 회계관직을 아래와같이 명정
 -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
 -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

3. 참 고 사 항

- 시정조정심의위원회 심의생략
(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제5호)

속초시 조례 제 호

속초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속초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"기금출납명령관" 을 "기금운용관"으로, "기금출납공무원" 을 "기금출납원"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형	개	정	안
	제4조 (기금관리공무원 임명) 시장은 영 제3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<u>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 출납공무원을 임명하되 기금출납 명령관은 사회과장, 기금출납 공무원은 사회계장으로 한다.</u>			제4조 (기금관리공무원 임명) _____ _____ <u>기금운용관</u> - <u>기금</u> <u>출납원</u> _____ <u>기금</u> <u>운용관</u> _____ <u>기금출납</u> <u>원</u> _____